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4가단150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2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D동 198㎡, E동 198㎡를 각 인도하고, 2023. 4. 16.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1. 2. 16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D동, E동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, 피고가 2023. 4. 16.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, 2023. 4. 16.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우

별지